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03

발의연월일: 2021. 2. 3.

발 의 자:김성주·진성준·최혜영

이정문 • 이용빈 • 이학영

서영석 • 김원이 • 임호선

허종식 · 정춘숙 · 신현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방역지 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명령 권한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,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·도지사까지 확대하고,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이와 더불어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

제고하고,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하고자 함.

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·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9조, 제75조 및 제79조제6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호의4까지 및"을 "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, "제1항제2호의2"를 "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·도지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운영중단, 폐쇄 명령을 받은 관리자 ·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위기경보 발령 상황에서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변경으로 장소 및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5조(청문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
- 2.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제7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6. 제4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	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-
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염병	
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	
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	
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	
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	
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	
호, 제2호의2부터 <u>제2호의4까지</u>	<u>제2호의4까지,</u>
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	제12호 및
를 할 수 있다.	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	③ <u>시·도지사</u>
・군수・구청장은 <u>제1항제2호</u>	제1항제2호 및 제2호
<u>의2</u> 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	<u> 의2</u>
관리자 •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	
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	
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	
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	
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	
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	
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	

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 <<u>신</u> 설>

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·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<u>4</u>	제3항에	따라	장소나	시설
<u>의</u>	운영중단	-, 폐쇄	명령을	받은
<u>관</u> i	믜자・운약	경자는	정당한	사유
<u>가</u>	없으면 여	이에 따	라야 힌	<u> </u>
<u>⑤</u>	<u>시 • 도</u> ㅈ	]사		
	<b>.</b>			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상황에서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및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# ⑤ (생략)

제75조(청문) 특별자치도지사 또 제75조(청문) 시·도지사 또는 시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59 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 <신 설>

(7)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.

- 1.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
- 2.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의 폐쇄 명령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제49조제4항에 따른 폐쇄 명 령을 위반한 자